

새롭게 제안된 조항 제15조(신): 여성 장애인들

“1. 국가 당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이 성 그리고(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2. 국가 당국은 성 관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여성 장애인들이 자유, 안전, 자율 속에서 존엄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a) 여성 및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들에서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별개의 언급을 포함시킨다;

(b) 사회 조사와 통계의 수집 노력들 속에 여성 장애인들을 통합시키고, 장애인들에 관한 성 분화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c) 임신, 출산, 산후의 건강보호, 육아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여성 장애인들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보호한다.

(d) 여성 장애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한다;

(e) 여성 장애인들이 성적 착취, 가정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보장한다.”

한국은 위의 내용을 제16조 앞에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를 법률과 자료 수집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제15조(신) (a)항과 (b)항은 여성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제안하는 것이고, (c), (d), (e)항은 어머니로서의 권리, 일할 권리에 대한 보호, 성적 착취, 학대, 폭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는 장애 아동들이 받고 있는 권리와 비슷한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사우사아프리카는 여성 장애인들은 가장 소외된 집단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들만을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일랜드는 이 조약의 목적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되고 모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아일랜드는 여성 장애인들과 장애 아동들 같은 고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집단들을 장애인 전체 공동체 내에서 세분화하여 다루는 제안들로부터 결과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부각시켰다. 유럽연합은 이 제안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하나의 원칙의 문제로서 서문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요르단은 세분화에 반대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말한 아일랜드/유럽연합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요르단은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서문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시에라리온은 아동이 특별한 인구 집단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인구 집단들을 다룰 특별한 조항들”이 이 조약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시에라리온은 아동은 포함시키고 여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관성이 없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예멘은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이 조약의 목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들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인들과는 다르다. 예멘은 여성 장애인들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아일랜드/유럽연합, 요르단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인디아는 여성 장애인은 서문과 일반 원칙들에 포함시키고,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유럽연합, 요르단 등의 주장처럼, 여성 장애인들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불필요하다.

노르웨이는 인디아의 견해에 공감하였고,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에 관한 권리가 아동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미비아는 여성 장애인들이 아동을 포함한 그 어떤 다른 집단보다 더 소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성 장애인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넣자는 한국과 사우스 아프리카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아일랜드는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포함시키고 여성에 관한 별도의 조항에는 반대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는 시에라리온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유럽연합은 여성과 아동이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유럽연합은 장애인의 문제를 너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어느 집단이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적게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지에 관한 논쟁으로 빠져들어서 논의가 지엽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조약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은 장애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도 지지하지 않는다. 어느 집단에만 적용되는 특별 조항은 어느 특정한 집단만이 가지는 권리들을 그 조항 속에서 언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그 조항에서 규정한 것만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애 아동들을 심히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CRC)은 인권에 관한 문서들 중에서 무수한 세부 조항들을 지니고 실제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RC의 불충분한 요소들을 이 조약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접근방식은 장애 아동의 인권 보호를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케냐는 장애인들의 몇몇 범주들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보편성의 원칙에 찬성하였다. 케냐는 여성 장애인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인식한 사우스 아프리카와 한국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번은 우리가 보편성의 원칙을 인식하면서도 성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겪어 온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는 조약이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서문은 이미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성 평등은 조약의 일반 원칙들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간다는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들을 넣는 것을 지지하였다. 장애는 동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범주이다. 서로 다른 장애인들이 서로 다르게 고통을 겪고 있고, 여성들은 성과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이중적인 차별과 위험을 경험한다.

타일랜드는 여성 장애인이 “남성들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조약은 오직 한정된 수의 조항들만을 담을 수 있다. 타일랜드는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부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접근방식을 찾아볼 것을 촉구하였다.

말리는 제15조(신)의 추가를 지지하였다. 말리는 유럽연합의 견해를 이해하지만, 이것은 다양한 세계이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여성은 이중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보편적인 조약은 장애인들의 연대의 이름으로 이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한국은 여러 범주들에 대한 많은 관심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모든 국가 당국들이 여성 장애인 같은 하위 집단들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에라리온은 각 집단의 특별한 관심들을 고려한 간결하고 짧은 형태로 된, 여성, 아동, 그 밖의 다른 위험한 상태에 있는 집단을 포함한 하위 인구 집단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특별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필요들은 서문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다. 여성과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들의 포함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가 “여러 집단들의 필요들과 입장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강조하지도 않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에라리온은 하나의 조항에 관한 안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한국의 제안의 장점을 인정하였지만, 이 조약은 성과는 무관하게 장애인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믿었다. 제15조(신)의 내용들은 폭력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은 다른 조항들에 통합되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인이 아닌 특별한 경우로서 장애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였다.

멕시코는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멕시코는 여성 장애인의 상황이 다른 인권 관련 문서들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왔고, 이런 이유로 다른 특별한 인구 집단들과 아울러 서문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코스타리카는 특별한 인구 집단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서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추가적인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하위 집단들에 대한 최선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인들의 하위 집단들의 계층화에 반대한다는 아일랜드의 견해는 옳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실질보다는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류되어야 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실질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형식은 임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코스타리카의 입장에 공감하였다. 여성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항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조약의 다른 조항들에 통합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 규정들의 실질이다. 인권 담론 속에서 특별한 범주들의 사람들의 필요들을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의 표준들이 낮아질 수 있는 이론적인 위험성은 그 표준들을 인권의 표준들에 맞추어 주의깊게 규정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비슷한 권리들을 다루는 다른 조약들과 이 조약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일반 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레바논은 장애인들 간의 그리고 장애인들 가운데서 차별의 위험성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왔다.

레바논은 여성, 노인이라는 특별한 인구 집단을 다루되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제한적인 특별 조항을 신설하자는 데에 시에라리온과 의견을 같이 한다.

장애에 관한 특별 보고자는 제15조(신)를 포함시킬 것을 지지하였다.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많은 차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을 특별하게 다루는 조항이 꼭 필요하다. 그 차원들이란 나이를 먹어가는 단계들, 다중적 차별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들과 문화적 가치들과 관련되어 있다.

발언권이 NGO 참여자들에게 허용되었다.

세계청각장애인연맹(WFD)은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CEDAW와 CRC 같은 기존의 조약들은 장애 여성 또는 아동의 모든 권리들과 필요들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다른 새로운 집단들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여성과 아동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보편적 적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긴 하지만 한국, 사우스아프리카, 멕시코 등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대다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항 또는 일반 원칙들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뢰 피해자 네트워크(LSN)는 한국의 제안과 우간다, 나미비아, 케냐, 사우스아프리카 등의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LSN은 지뢰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서 여성들 및 소녀들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사지 절단 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추가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은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는 거의 인식되어 있지 못했고, 이것은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성 장애인들은 “불쌍한 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들은 흔히 무시당하고, 국가들의 인식 없이는 앞으로 움직일 수 없다

5. 여성 장애인

우리는 여성 장애인의 문제가 조약 초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발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 장애인들은 항상 이중적인 차별 아래 있고, 조약은 이러한 관심에 대하여 반응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성 장애인들이 그 어떠한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특히 학습 장애를 지닌 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또한 폭력과 학대를 야기시키는 사회적 요인들도 조약에서 인정되고 언급되어야 한다.

WHO

제9조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평등한 인정

WHO는 장애인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평등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WHO는 이 조항에서 다루어진 규정들을 지지하고, 적절한 적접절차에 의해서 명문화된 반대 규정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모든 사람은 법적 자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WHO, 2003).

제10조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

WHO는 자유롭고 정보에 기인한 동의가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의 필요들을 충족시킴에 있어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정보에 기인한 동의라는 문제는 재활 환경을 포함한 병원들에서의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인 대우와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의 비자발적인 대우와 관련된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WHO는 “위협 또는 강제 속에 함축된 위협이 수반되거나 제안된 대우에 대한 적절한 대안들이 고려를 위해 제시되지 않는다면 동의는 합법적일 수 없다”고 믿는다(p. 24) (WHO, 2003).

ILO

제9조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평등한 인정

- ILO는 초안 본문이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적 자격, 권리들, 자유들에 대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필요로 하는 조력의 정도에 비례해서 그들의 법적 자격을 행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조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 ILO는 조약이 사법권에 접근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조력은 효과적인 분쟁 방지 및 해결 체계, 법률 구조(救助)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한다.

BIZCHUT

제9조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평등한 인정

- (a) 법적 자격의 행사의 제한 - 절차적 보호장치들에 비례하여, 그리고 그 장치들에 따라서

우리의 견해로는 장애인들이 비록 완전한 조력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서 그들의 법적 자격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표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과 아울러, 법적 자격의 과도한 또는 불균형적인 제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져야 할 조치들이 분명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로 인한 법적 자격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 감독되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및 법적 자격의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를 보장해주는 절차적 보호장치들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b)항과 (e)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b) 법적 절차의 개선 - 법적 자격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력의 일부

법적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은 관련된 법적 절차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d)항은 장애인이 이러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이것, 특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규정에 증거 제출을 포함한 법적 절차들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아래 12(a)에서의 우리의 논평을 보라.)

제10조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

(a) 법적 절차를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게 만들어야

법적 절차들에 대한 권리를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들에 맞춰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 -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들에서 - 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리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들에 맞춰서 조사와 증인 절차들에 대한 설비들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법적 진술과 심문을 직접 들을 기회.

(b) 장애의 결과로서 범죄 의도가 없는 경우에 - 형사상의 책임도 없다

우리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 행위의 통제능력의 결여 또는 해당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 또는 해당 행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의 결과로서 범죄의 의도 없이 행위들이 수행되는 경우에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지침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c) 강제 입원, 강제 처치(處置), 강제된 시설 입소에 관한 항목이 이 절에 삽입되어야 한다

(i) 현재의 초안에서 이 문제는 제11조와 제12조(고문 또는 가혹행위, 비인도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처우 또는 형벌로부터의 자유,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강제된 시설 입소는 제15조(독립적인 삶과 공동체 속에 포함되는 것)에서도 다루어진다.

우리의 견해로는 강제 입원, 강제 처치, 강제된 시설 입소로부터의 보호를 다루는 적절한 곳은 실제로 장애인의 자유의 박탈에 관한 논의와 한계를 다루고 있는 이 조항이다. (강제된 시설 입소의 경우 -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제15절에 나온다 - 는 공동체에서의 삶에 대한 권리와 연관된다.)

우리의 입장은 강제 입원과 강제 처치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제 입원과 강제 처치로부터의 보호의 원칙은 최소한의 예외들을 단서 조항으로 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고문, 가혹행위, 비인도적인 형벌, 폭력 등등과 같은 전면적이고도 완전히 부정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는 조항들 속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제11조와 제12조에서 제10조로 옮겨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ii) 이 규정에 대한 예외들: 이 규정은 장애인들의 권리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주는 절차적 보호장치들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드문 예외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강제 입원으로부터, 그리고 강제된 처치 방식들을 포함한 강제적인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약 제11조(2)와 각주 38을 보라.)

제9조

(법 아래에서의 평등 - 멕시코)

(a)

(평등한 - 중국)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 우간다)(모든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 중국; 멕시코)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과 평등한 조건들 속에서 법 앞에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 멕시코)

(b)

(받아들여야 - 우간다) (보장해야 - 우간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 우간다) (정치적,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 우간다) 문제들 - 인디아) - 코스타리카)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과의 차별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들을 지닌 개인들로 인정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해야 - 유럽연합)

(c) (노력해야 - 인디아)

(i) (실행가능한 정도로 - 인디아)

(그리고 장애인의 법적 자격, 권리들, 자유들에 - 유럽연합) (간섭하지 않는다 - 우간다) (훼손하지 않는다 - 우간다)

(ii) (오직 - 유럽연합) (자격을 갖추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 의해서 - 유럽연합)

(주기적인 개정들을 포함한 - 코스타리카) (제조사를 위한 규정들을 포함한 - 유럽연합)

[(d)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보를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그들에게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그들의 결정, 선택, 선호들을 표현하는 데 (구속력 있는 합의서나 계약을 맺거나 문서들에 서명하거나 증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인디아) 대한 조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노력하여야 - 인디아)] - 중국

(국가 당국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국)

(e) (사용하거나 처분할 - 케냐)

(장애인이 빈곤에 처해 있는 경우에 그들이 - 베트남)

(장애의 질과 정도를 염두에 두고 - 시리아)

(g) 국가는 열악한/일시적으로 열악해진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법적 자격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법적 보호장치들이 꼭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3자를 법적 후견인/대리인으로 지명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질 수 있다 - 인디아

(g) 국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 조약에 제시되어 있는 사법 절차 속의 모든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의 이해의 어려움을 줄이고 신체적(사회적 - 보츠와나) 및 의사소통 장애들을 제거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일본

(g)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들과 자유들을 침해받은 모든 사람이, 그 침해가 공식적인 자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국가 당국 앞에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코스타리카

(1. 국가 당국은 민사 문제들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성인들이 다른 성인들과 동일한 법적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자격을 행사할 평등한 기회들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당국은 장애를 가진 성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평등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의 절차의 모든 단계들에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2. 국가 당국은 장애를 가진 성인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그들의 결정, 선택, 희망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조력을 포함한 그들의 법적 자격을 행사하는 데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그 조력은 성인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요구되는 지원의 정도에 비례한다.

3. 오직 자격을 갖추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만이 법에 의해서 규정된 표준과 절차 아래에서 어떤 장애를 가진 성인이 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가 당국은 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신하여 법적 자격을 행사하는 대리인을 지명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장치들을 지닌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대리인의 지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이 조약 및 국제 인권법과 일치하는 원칙들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a) 대리인의 지명이 장애를 가진 성인의 법적 무능력의 정도에 비례하고 그 성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지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b) 대리인들이 그 성인의 결정, 선택, 희망을 최대한도로 고려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캐나다

(c) 법적 무능력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요르단

제10조

(b) (오로지 - 캐나다)

(c) 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할 때 그들이 구금 상태 아래에서일지라도 재판을 받는 것을 보장해줄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 우간다

2.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절차를 통해서 - 멕시코

(a) (장애인들에 대한 자유의 침해의 정도는 보호 및 조력의 도구들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충족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것 등과 같은 일반적인 표준과 적절한 편의의 제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한국)

(그들이 -로 인하여 만나게 되는 도전들 - 요르단)

(평등의 조건들 속에서 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존중하는 것 - 코스타리카)

(b) (적용가능한 법과 - 중국) (그들의 법적 권리들과 - 뉴질랜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 뉴질랜드)

(i) (그들에게 그러한 어떤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이 제공되어야 할 경우에)

(자유 박탈이 불법했다는 해당 당국에 의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완하였다 - 유럽연합)

? 32
[Handwritten signature]

(국가 당국은 자신의 관할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격을 갖춘 국가 법정들과 그 밖의 다른 국가 기관들을 통해서 이 조약에 반하는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침해하는 불법한 자유의 박탈로부터의 보호와 구제수단들, 그러한 법정들로부터 그러한 행위들의 결과로서 겪게 된 그 어떤 손해에 대해서 정당하고 적절한 회복 또는 만족을 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멕시코

(e) 국가 당국은 장애인들이 구금되거나 수감될 때 그들이 사회 생활에 재통합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들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여 그들의 특별한 장애 상황에 맞는 장소에 유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콜롬비아

(3. i. 국가 당국은 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들과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들의 적용에 따라서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의 강제된 시설 입소가 불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ii. 법률은 장애인들의 강제 시설 입소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해당 장애인의 최선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유럽연합

★(3. 불법적인 자유의 박탈의 희생자였던 장애인은 누구라도 행사 가능한 보상요구권을 가져야 한다 - 캐나다)

(4. 국가 당국은 범죄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장애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문제들 및 선고의 집행에 있어서의 법 체계를 철저하게 개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 멕시코)